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9차 보건복지위원회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 폐지〉

■ 한지아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1061호)

2024. 11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연 광 석

목 차

I . 개요	1
II . 검토의견	3
1.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 폐지	3

I. 개요

1.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1061호)

가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한지아의원 등 11인
- (2) 제 안 일 : 2024. 6. 27.
- (3) 회 부 일 : 2024. 6. 28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류, 마약,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은 중독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함. 이로 인해 중독의 예방,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「중독치료회복지원법」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,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, 현행법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를 「중독치료회복지원법」으로 이관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3 삭제).

다.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」(의안번호 제106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

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II. 검토의견

1.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 폐지

□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「중독치료회복지원법」에서 중독의 예방,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3 삭제).

현행	개정안
<u>제15조의3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, 마약, 도박,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(이하 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u> <u>1.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</u> <u>2. 중독자 대상 상담, 치료,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</u> <u>3.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</u> <u>4.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</u> <u>5.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</u>	<u><삭 제></u>

<u>여 필요한 사업</u> ③ <u>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</u> ④ <u>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 ⑤ <u>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	
--	--

□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「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」에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체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국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구성되어 있으므로,

개정안은 해당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등장하게 될 새로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체계를 위하여 현행법에 근거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되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임.

<현행법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제정법안의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조문 비교>
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	「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」
제15조의3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, 마약, 도박,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제16조(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(이하 “지역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(이하 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
1.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. 중독자 대상 상담, 치료, 재활 및 사회복지 지원사업 3.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.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.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	1.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. 중독자 대상 사회복지 지원사업 3. 중독자와 제14조에 따른 중독전문치료기관과의 연계 4. 중독자 및 중독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·교육의 실시 5. 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이 참여하는 자조모임 운영 지원 6. 중독자의 사례관리 7. 그 밖에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	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	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④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--	--

- 다만, 「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」의 부칙 제2조1)에 따르면, 현행법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해당 제정법안에서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서 연속상의 지위를 갖게 되어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,
-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법에 근거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는 사라지므로 부칙의 표현을 수정하여 ‘이 법 시행 당시’가 아니라 ‘이 법 시행 이전에’로 표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이 경우 현행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.

문 의 처

02)6788-5498

1) 「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」

부 칙

제2조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.